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 829호 2011. 5. 10(화)

## ◀ 입법예고 ▶

○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1454호) ..... 2

회 람									
--------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1 - 454호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5. .

##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  
에 대해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사용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조례 제명 개정
- 나. 참전유공자 지원 목적 및 정의의 정비 (안 제1조, 제2조)
- 다. 참전유공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의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사항을 수정함

(안 제3조, 제4조)

라. 명칭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3.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270-2943, FAX 270-2960, E-mail :lycg@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를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하고, “6·25에 참전한 유공자” 를 “참전 유공자”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6·25 참전 유공자” 를 “참전유공자” 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1.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9의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을 받는 사람

제4조 본문 중 “시장은 6·25참전유공자” 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6·25 참전유공자” 를 “참전유공자” 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수당의 지급 중단)” 을 “(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로 하고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를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액은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참전유공자 참전명예 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호수	별지 제1호 서식
근거법규	포항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주무부처및 보조기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용지의 규격	가로 210mm× 세로 297mm		법령 제·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054-270-2943
지질 및 중량	일반용지 60g/m <sup>2</sup>		사 용 처	포항시
활자	구 분	크기		5 년
		인쇄	전산기기	보존기간 054-270-2943
	제 목	16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 용	10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0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포항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규격화된 서식사용으로 편리도모		

■ 포항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0일
------	-----	----------

참전등록번호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호수	별지 제2호 서식
근거법규	포항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주무부처및 보조기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용지의 규격	가로 210mm× 세로 297mm		법령 제·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054-270-2943
지질 및 중량	일반용지 60g/m <sup>2</sup>		사 용 처	포항시
활자	구 분	크기		5 년
		인쇄	전산기기	보존기간 054-270-2943
	제 목	16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 용	10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0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포항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규격화된 서식사용으로 편리도모			



■ 포항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10일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명 포항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및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의 규정에 의하여 <u>6·25에 참전한 유공자</u>에 대하여 상응 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6·25 참전 유공자</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     <u>&lt;신 설&gt;</u></li> <li>2.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li> <li>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li> <li>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li> </ol>	<p><u>제명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u>참전유공자</u>----- ----- -----</p> <p>제2조(정의) ----- <u>참전 유공자</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병역법</u>」 또는 「<u>군인사법</u>」에 의한 <u>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u></li> <li>3. ----- -----</li> <li>4. ----- ----- -----</li> <li>5. ----- ----- -----</li> </ol>

현 행	개 정 안
<p>인정한 자</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라 등록된 6.25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의 지급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p> <p>1. <u>6.25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u></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제8호·제9호·제9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u>보훈관련 보상금을 받는 자</u></p> <p>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6.25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1. <u>6.25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u></p> <p>2. <u>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u></p> <p>3. <u>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u></p>	<p>-----</p>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이하 “<u>법률</u>” 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로서 지급일 기준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p> <p>1. <u>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u></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보훈관련 보상금을 받는 사람</u></p> <p>제4조(지원사업 등) 포항시장(이하 “<u>시장</u>” 이라한다)은 <u>참전유공자</u>-----</p> <p>1. <u>참전유공자</u>-----</p> <p>2. <u>참전유공자</u>-----</p> <p>3. <u>참전유공자</u>-----</p>

현 행	개 정 안
<p>승 하기 위한-----</p> <p>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시장은 매분기 지급시기 전에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u>지급을 중단</u>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된 때</li> </ol>	<p>-----</p> <p>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p> <p>-----</p> <p>-----</p> <p>-----</p> <p>-----</p> <p>-----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액은 전액 환수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그 밖에 -----</li> </ol> <p>-----</p> <p>-----</p>